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26회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18. 12. 11 (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이주현)

1. 회부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18. 11. 19
- 회부일 : 2018. 11. 20 (의안번호 : 18-119)

2. 제출이유

상위 근거법령인 “성별 영향 평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기존 조례상의 모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개정
 - 조례의 명칭과 조문 전반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제6조 제1항 제5호 “요청 한”→“요청한”
 - 제16조 제3호 “부진하여위원” → “부진하여 위원”
 - 제17조 “수당 과” → “수당과” 등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성별 영향 평가법'(2011.9.15제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기간:'18.10.11일~'18.10.31)
- 부패영향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성별 영향분석 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진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6.9.13일 최초 제정·공포 되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첫번째로**, 이진 일부개정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성별 영향 평가법’이 2018.9.28일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적합하게 이진 기존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개정 주요내용 -

- 기존 조례상의 모든 “성별영향분석평가” 용어를 “성별영향평가” 용어로 개정
- 기존 조례상 적용부분 : 조례의 “명칭”과 “조문” 전반

- **두번째로**, 이진 기존 조례의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 개정 주요내용 -

- 제6조 제1항 제5호 “요청 한” ➡ “요청한”
- 제16조 제3호 “부진하여위원” ➡ “부진하여 위원”
- 제17조 “수당 과” ➡ “수당과” 등

- **검토 종합결과**, 상위 법령인 “성별 영향 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이진 기존 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또한 조문상 용어나 띄어쓰기를 맞춤법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진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의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마포구</u> <u>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성별영향분석평가법</u>」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u>성별영향분석평가</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성별영향분석평가</u>"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u>분석평가</u>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2. (생략)</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마포구</u> <u>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성별영향평가법</u>」----- ----- ----- <u>성별영향평가</u>에 ----- ----- -----.</p> <p>제2조(정의) ----- -----.</p> <p>1. "<u>성별영향평가</u>"----- ----- ----- ----- <u>평가</u>하 여 ----- -----.</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함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6조(분석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

② ----- 성별영향평가-----

제4조(적극적 조치) -----

----- 성별영향평가함-----

----- 성별영향평가를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

- 「성별영향평가법」-----

- 성별영향평가의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 4. (생략)

5. 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분석평가 대상으로 요청한 정책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규칙·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분석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1. ~ 4. (현행과 같음)

5.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요청한 -----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 성별영향평가 -----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실시) ---

----- 성별영향평가 -----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 의회의 심의·의결 전

2. ~ 4. (생략)

제8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 1.·2. (생략)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분석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0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

조례·규칙심의회-----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 성별영향평가-----
-----.

- 1.·2. (현행과 같음)
3. 성별영향평가결과-----

4. ----- 성별영향평가-----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
- 성별영향평가를 -----
----- 성별영향평가서-----.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 성별영향평가-----

-----.

제11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소관 정책에 대하여, 구청장은 통보받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제1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① -----
----- 특정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의 -----
-.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 -----

-----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

② -----
-----.

1. 성별영향평가-----
--
2. 성별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결과-----

---- 관한 사항

4. (생략)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 과장, 사업부서 과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생략)

2. 그 밖에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2. (생략)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

4.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성별영향평가 -----
-----.

③ -----

-----.

1. (현행과 같음)

2. ----- 성별영향평가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성별영향평가 -----
-----.

제16조(위원의 해촉) -----

-----.

1. 2. (현행과 같음)

3. -----

이 부진하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진하여 위원-----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수당 등) -----

-- 수당과 -----

제18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 본청 복지교육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8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 성별영향평가를 -----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1. (생략)
2.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

1. (현행과 같음)
2. ----- 성별영향평가-----
3. ----- 성별영향평가서-----
4. ----- 성별영향평가-----

항

5. 제19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분석평가 교육)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분석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 성별영향평가

6. ----- 성별영향평가 -----

---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

항

제19조(성별영향평가 교육) -----

--- 성별영향평가의 -----

----- 성

별영향평가에 -----

-----.